2022년도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2. 3. 21.(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이성엽, 송수현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1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46건(안건번호 제2022-11798호~1234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11798호~11811호(순번 1번~14번)는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안건번호 제2022-11812호~11818호(순번 15~21번)는 ◇◇◇ ◇◇◇에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이중 순번 15번~20번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21번은 이미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안건번호 제2022-11819호(순번 22번) 일명 '매드무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으로, 원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법 시장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67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1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자, 저작물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별도 의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음.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2-26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예스파일' 등 40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731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심의 요약표와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모두 검토보고서의 3쪽 이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4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 총 16건임. 순번 7번은 '▲▲▲▲'에 게시된 영화 '○○○○○ ○○'로 340포인트에 영

화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3번은 '◈◈◈◈'에서 제공하는 출판저작물로,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위 두 건을 포함한 14개 순번, 16개 게시물 모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 및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14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의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14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순번 15번~21번은 ◇◇◇ ◇◇◇에 게시되어 있는 영상저작물임.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불법복제물 총 37건임. 이 중 순번 17번 내지 20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비공개 게시물로 전환되었으며, 순번 21번은 게시물이 삭제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번은 ◆◆◆◆에서 방송된 더빙판 그대로 전체 분량 제공중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번은 채증자료를

통해 오프닝 제외 21분 가량의 전체 분량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고, 현재는 비공개 글로 전환된 것이 확인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1번은 채증자료를 통해 24분 18초 가량의 전체 분량 제공중이었던 것이 확인되나, 현재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임.

비공개 게시물의 경우, 이웃 공개나 서로 이웃 공개 등의 형태로 지금도 제공되고 있거나 향후 전체 공개 전환이 예상될 수 있는 점, 시정권고 대상인 심의대상 게시물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따라서 순번 15번~20번은 대하여서는 가결 의견, 순번 21번은 더 이상 삭제·전송 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15번 내지 21번, ◇◇◇ ◇◇◇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의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5번 내지 20번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순번 21번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순번 22번은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이용중인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음악에 맞춰서 일본 애니메이션 장면을 선택하여 편집한 게시물임.
  200화 가량의 애니메이션 중 몇 장면을 선택하여 3~5분 정도의 음악 분량에 맞추어 편집을 한 일명 '매드무비'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원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법 시장에 대한 대체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22번의 영상 저작물을 편집하여 이용중인 저작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우리 위원회는 이른바 '짤방'과 같은 게시물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을 그러한 정도의 범위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부결하여 왔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별도의 의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22번은 만장일치로 부결하도록 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순번 23번~54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29번은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영화 '경관의 피'임.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한국 영화로, 현재 티빙, 웨이브 등 OTT에서 구입해서 볼 수 있는 영화를 웹하드에서 100포인트에 판매중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34번은 한국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로, 최근에 개봉하여 극장 상영 및 OTT 서비스 중임. 해당 영화를 웹하드에서 255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37번 영화 '미싱 타는 여자들'은 다큐멘터리 영화임. VOD 서비스로 판매중인 영화를 다운로드 제공중인 사안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3번~54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1798호~11811호(순번 1번~14번)에 대하여는 가결, 안건번호 제2022-11819호(순번 22번)는 부결, 그 외(안건번호 제2022-11812호~11818호(순번 15~21번), 제2022-11820~12343호(순번 23번~54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3. 28.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